

조선 후기 야담에 나타난 송사담의 세 유형과 그 의미

—야담집 색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연구의 한 사례—*

이승은**

<차례>

1. 서론
2. 야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송사담의 유형 설정
3. 1유형 : 원<척<관 - 세계 질서의 당위적 수호
4. 2유형 : 원<척=관 - 질서의 혼란과 균열
5. 3유형 : 원=척≤관 - 새로운 질서의 출현
6.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조선후기 야담에 나타난 송사담을 송사에 참여하는 인물 간의 관계에 따라 세 유형으로 분류하고, 송사담에 반영된 사회의 변화상 및 야담이 지향하는 가치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때 조선후기 야담집에 나타난 송사담의 전체적인 상을 조망하기 위해 야담집 색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다.

첫째 유형은 원고와 피고의 관계가 선악의 기준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되며, 판장은 현명한 판결로 원고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이야기들이다. 이는 현실 세계의 문제가 관장으로 대변되는 유가적 질서에 의해 해결되는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이야기 속에서 세계 질서는 항구하게 보존된다. 둘째 유형은 관장이 피고의 편에 서거나 원고의 억울함을 가중시키는 경우다. 이 유형에서는 판결이 돈이나 개인적 친분과 같은 현실적 상황에 영향을 받는 모습으로 보이며, 가치 혼란의 세계상을 반영하고 있다. 셋째 유형에서는 절대적이고 당위적 가치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계약과 신뢰의 문제가 중요하게 조명되며, 원고와 피고의 관계는 선악의

* 본 연구는 순천향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수행하였음.

** 순천향대 향설나눔대학 조교수

기준으로 분별하기 어려운 양상을 보인다.

조선후기 송사의 원인은 강상 범죄의 문제에게 벗어나 경제 문제 등으로 점차 다변화되는 양상을 보이며, 송사담 역시 현실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야담집에는 여전히 첫째 유형의 송사담이 빈번하게 수록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야담 향유층이 지니고 있는 세계관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 야담, 데이터베이스, 송사, 재판, 법, 관계, 조선후기

1. 서론

어떤 세 사람이 동헌에 소송하여, 섬들 앞에 나란히 꿇어앉았다. 그들이 소송하는 것은 삼백 전짜리 송아지 한 마리였다. 원이 책망하기를, “그대들은 이 고을 양반이 아닌가? 또한 노인인데, 송아지 한 마리가 무슨 대단한 것이라고 세 사람씩이나 와서 이렇게 하는가?”라고 하자, 그들은 사과하면서,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소송할 일은 반드시 해야지요”하고는 말을 마치고 돌아갔다.

또 읍에서 북쪽으로 육십 리나 떨어진 곳에 사는 어떤 이는, 열두 푼 때문에 동헌에 와서 소송하였다. 원이 말하기를 “네가 말을 타고 육십 리를 왔으니 필시 길에서 경비가 들었을 것이고, 그 경비는 필시 열두 푼이 넘었을 텐데, 소송을 안 하는 것이 이익이 되는 줄 왜 모르느냐?” 하니 소송한 사람이 “비록 열두 껌미를 쓸지라도 어찌 소송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라고 말하였다.

그들의 풍속이 매우 억세고 융통성이 없어, 무슨 다툼 일이 있기만 하면 꼭 소송을 하는 것이다.¹⁾

1) 『俗喜爭訟』, 『鳳城聞餘』,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편역, 『완역이옥전집』 2, 소명출판, 2001, 99쪽.

이옥(李錕, 1760~1815)은 1799년 정조의 견책을 받아 영남의 삼가(三嘉) 지역으로 충군되었을 때 보고 들은 것을 『봉성문여(鳳城聞餘)』라는 기록으로 남겼다. 그곳에서는 양반이든 상민이든 간에 작은 이익에도 송사를 일삼는데, 심지어 소송에 드는 경비가 그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넘어서더라도 이를 마다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옥은 지역의 풍속이 역세고 융통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당시 이른바 ‘민간에서 소송을 좋아하는[民俗好訟]’ 세태는 서울과 지방, 남녀노소와 신분고하를 막론한 것이었다.

조정은 ‘비리호송(非理好訟)’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목민관에게 백성들로 하여금 지나친 쟁송을 삼가게 하도록 당부했다.²⁾ 이는 명분상 유교의 통치방식이 법적·물리적 강제보다는 덕치·예치·왕도정치와 같이 도덕에 의한 정치를 앞세웠고, ‘무송(無訟)’을 이상으로 삼았기 때문이었다.³⁾ 뿐만 아니라 잦은 송사는 비용과 시간의 소요로 생산성을 저해하고 공동체의 화합을 깨뜨리는 등 실질적인 손해를 야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조선 중기 이후부터 백성들은 각종의 소장과 원정을 통해 자신의 불이익을 시정하려 했고 송사는 백성들 사이에서 낯설지 않은 것이 되었다.⁴⁾ 16세기 중엽 『사송유취(詞訟類聚)』를 시작으로 지방관이 재판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편집된 소송지침서인 사송법서류가 다수 간행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준다.⁵⁾ 이밖에도 『심리록』, 『증수무원록』, 『흠흠신서』

2) 한국고문서학회, 『조선의 일상, 법정에 서다』, 역사비평사, 2013, 89쪽.

3) 『논어』 안연편에서 공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子曰, 聽訟, 吾猶人也, 必也使無訟乎!”

4) 일반적으로 민사관련 소송을 詞訟, 형사관련 소송을 獄訟이라고 구분하고 있다. 조윤선, 『조선 후기 소송 연구』, 국학자료원, 2002.

5) 조선전기 간행된 법전인 『經國大典』은 독립된 형률이 마련되지 않고 중국의 『大明律』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다. 또한 이후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다양한 시행세칙과 국왕의 수교(受敎) 등을 정리한 『大典續錄』, 『大典後續錄』 등이 간행되면서 수령

등 형사사건을 기록한 사례집이 출판, 보급된 것을 통해 이 시기 옥송(獄訟)의 증가 및 그 양상 또한 확인할 수 있다.⁶⁾ 송사 없는 사회를 추구하였으나 조선시대 내내 소송은 계속 늘어만 갔던 것이다.

이러한 세태를 반영하듯, 조선후기 야담과 패설에는 송사를 다룬 이야기가 상당수 보인다. 실제 송사사건의 기록은 여러 경로로 민간에 전달되었다. 구전뿐만 아니라 중인이나 평민 출신 자제들이 읽었던 시행문의 소장과 탄원서,⁷⁾ 각종 판례집 등이 지상(紙上)에 사건을 세세하게 재현해주었던 것이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과 분쟁을 골자로 하기에 송사는 그 자체로 흥미로운 이야기거리가 되어 야담과 패설 속으로 포섭될 수 있었다. 이들은 실제 사건을 재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도 하고, 사실에 근거하되 그 내용을 변개하기도 하였으며 때로는 송사를 차용하여 의론을 펼치기도 하였다. 즉 송사이야기는 실제 사건기록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갔던 것이다.

그간 이러한 송사담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은 크지 않았다. 송사소설의 원천 소재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문헌소재 송사설화에 대한 검토가 한

이 참고해야 할 범전은 점점 늘어났다. 이런 범전들은 각각 개별적으로 간행되었기 때문에 이를 참조하기 위한 하나의 종합적인 간행물이 필요했다. 이러한 사송법서류로는 『詞訟類抄』, 『大典詞訟類聚』, 『決訟類聚』, 『決訟指南』, 『決訟類聚補』, 『聽訟指南』, 『司訟錄』 등이 현전하고 있다. 김명화, 「조선시대 수령의 소송지침서 『사송유취』의 편찬과 활용」, 『서지학연구』 66, 서지학회, 2016, 335쪽.

6) 심재우, 『조선후기 국가권력과 범죄 통제』, 태학사, 2009, 73~142쪽.

7) 양반가의 자제들과 달리 중인이나 평민 출신의 자제들은 기초적인 한문을 습득한 다음 시행문을 주로 읽었다. 이는 후에 아전이 된 후 실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이들이 읽었던 시행문에는 소장을 비롯해 토지매매명문, 제축문, 혼서, 간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시행문의 내용이 추후 단편 서사물이나 다른 읽을거리로 변모했을 가능성도 높다. 시행문의 내용과 특징에 대해서는 전경목, 「조선후기에 서당 학동들이 읽은 탄원서」, 『고문서연구』 48, 한국고문서학회, 2016; 「서당 학동이 읽은 필사본 ‘용례집’의 내용과 특징」, 『한국고전연구』 34, 한국고전연구학회, 2016. 참조.

차례 이루어진 후⁸⁾, 최근 야담의 송사담이 지니는 의미를 현실에 대한 민중의 기대지평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한 것이 유일하다.⁹⁾ 이처럼 야담 연구에서 송사담이 주목되지 않았던 까닭은 소재별 분류의 문제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송사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등장인물이나 사건의 내용에 따라 열녀담, 풍수담, 귀신담, 노비담 등으로 귀속되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 또 다른 분류의 결과물로 송사담이라는 영역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야담 작품을 읽어보려고 하는 것은 송사라는 소재가 지닌 독특함 때문이다. 송사라는 사회적 현상은 그 시대 사람들의 삶과 가치관이 투영되고 그 사회의 구조와 특성이 응축되어 나타난 산물로, 시대와 사회를 이해하는 하나의 척도로 기능한다. 야담은 경험적 서사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많을뿐더러 특히 송사 소재는 현실과 직접적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러므로 야담의 송사담을 통해 당대 사회를 보다 면밀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재래의 논의를 기반으로 하되,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여 송사담의 존재 양상과 그 의미를 살피고자 한다. 먼저 송사담을 옥송과 사송을 포괄하여 송사가 작품의 주요 사건이 되는 이야기로 규정하고, 『동패락송』, 『잡기고담』, 『계서잡록』, 『기문총화』, 『청구야담』을 대상으로 그 존재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이들은 18~19세기에 산출된 조선후기 야담집의 전형으로 대표성을 띤다.¹⁰⁾ 이들 송사담을 송사에 참여하는 인물간의 관계에 따라 크게 세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를 통해 송사담에 반영

8) 이현홍, 『문헌소재 송사설화의 유형과 의미』, 『배달말』 14, 배달말학회, 1989. 여기서는 야담과 패설류를 아울러 문헌 속에 등장하는 송사설화의 유형을 교화/비판/유희적 시각의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9) 김준형, 『야담에 나타난 윤리의 위반과 법, 그 문화사적 의미』, 『돈암어문학』 27, 돈암어문학회, 2014.

10) 소화집, 패설집에도 여러 편의 송사담이 실려있으나 본고에서는 이를 주된 논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소화나 패설은 작품의 미의식이 야담과 달리 골계미에 있으며, 송사 자체나 판결자인 판장을 희화화하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된 사회의 변화상 및 야담이 지향하는 가치를 탐색하는 것을 최종적인 목적으로 한다.

송사는 필연적으로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판결의 결과는 송사 당사자와 세계 질서 사이의 관계를 표상한다. 송사의 내용이나 등장 인물과 같이 송사담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를 기준으로 하는 대신 각각의 요소들이 배치되어 있는 구도 자체, 즉 송사담 내 인물의 관계를 기준으로 삼아 작품을 분류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 판단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2. 야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송사담의 유형 설정

주지하듯이 조선은 성리학을 통치의 이념으로 삼았다. 사회질서를 구현하는 주된 정치사상은 禮였으며, 法은 사회 통제를 위한 보조적, 도구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표방해왔다.¹¹⁾ 다음에서 조선 중기 예치와 법치에 대한 인식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이때 종종께서 ‘결송대한’을 만들려고 하였는데, 공이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인심의 후박이 실로 교화와 관련되어 있으니, (교화를 행하면) 백성들로 하여금 쟁송하지 않게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대한을 정할 필요가 있겠는가?”¹²⁾

11) 박소현, 「법률 속의 이야기, 이야기 속의 법률」, 『대동문화연구』 77,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417쪽.

12) 『有明朝鮮國崇政大夫議政府左贊成兼知經筵春秋館成均館事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五衛都摠府都摠管 世子貳師 贈諡文敬金公神道碑銘』, 『湖陰雜稿』 권7. “時中廟欲立決訟大限, 公以爲人心厚薄, 實係教化, 使民無訟可矣. 何必立限?”

정사룡(鄭士龍, 1491~1570)이 쓴 김안국(金安國, 1478~1543)의 신도비명 중 일부분이다. 성종 대에 노비소송의 적체를 처리하는 단송도감(斷訟都監)을 설치한 바가 있었는데, 이는 산적한 소송을 빠르게 처리해 원성을 없애고 궁극적으로는 ‘무송(無訟)’의 이상을 이루기 위한 임시방편이었다. 중종 대에 이르러 다시 단송도감 설치에 대한 논의가 제기된다. 그러나 점점 증가하는 송사를 단송도감과 같은 일회적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그 근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소송 사유가 발생하고 일정한 기한이 지나면 소송을 금지시키는 과한법을 규정하고자 했던 것이다.¹³⁾ 그런데 김안국은 과한법의 필요에 의문을 표하면서, 나날이 증가하는 송사에 대한 방책으로 ‘교화’를 제시한다. 이는 백성 개개인의 마음을 감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사림과 문인 지식인 김안국을 위시한 당시 위정자들의 이상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비록 예치와 무송을 이상으로 삼았지만 법적 체계를 공고히 하려는 흐름 또한 지속되었다. 조선은 건국 직후 일반형법으로서 『대명률』을 포괄적으로 계수하고 성종대에 통일법전인 『경국대전』을 제정함으로써 고려에 비해 완비된 형사사법체계를 이루었으며, 이에 따라 중앙의 의금부, 형조, 한성부 등과 지방의 관찰사, 수령 등에 이르기까지 각 사법기구의 조직과 관할 등에 대한 규정이 갖추어졌다.¹⁴⁾ 이를 통해 유교적 사법질서를 확립해나갔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선 후기로 가면서 소송은 점점 늘어난다. 뿐만 아니라 그 양상도 변화했다. 옥송의 경우 강상(綱常)의 범죄가 주었던 조선 전기와 달리 사기, 위조 등 경제 범죄가 급증했다.¹⁵⁾ 사송

13) 임상혁, 『조선 전기 민사소송과 소송이론의 전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0, 133쪽.

14) 조지만, 『조선시대의 형사법-대명률과 국전』, 경인문화사, 2007.

15) 조광, 『18세기 전후 서울의 범죄상』, 『전농사론』 2, 서울시립대 국사학과, 1996.

의 경우 토지, 산송, 매매, 노비 등이 소송거리가 되었다. 그중 노비와 토지 문제는 고려 말부터 지속적으로 존재해왔던 것이지만¹⁶⁾, 산송은 16, 17세기 유교적 상장례가 보급되고 종족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등장하기 시작했다.¹⁷⁾ 서울을 중심으로는 도시 지역에서 이전에 볼 수 없던 경제 범죄 관련 소송이 급증했다. 정조대 형사사건기록인 『심리록』에는 서울에서 평민층이 일으킨 위조, 절도 범죄가 상당수 나타나는데, 이는 강상 윤리에 어긋나는 범죄를 가장 무겁게 여겼음에는 변함이 없지만 18세기 서울에서 각종 경제 범죄가 새롭게 많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⁸⁾ 인간의 삶의 형태가 복잡해지면서 송사의 종류도 점차 다양해지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그렇다면 조선후기 사회상의 변화를 꾀진하게 담아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야담집의 편찬자들은 이처럼 다변화된 송사사건 중 무엇에 관심을 가졌던 것일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야담집 색인 데이터베이스¹⁹⁾를 활용하여, 여러 야담집에 수록된 송사담의 내용을 분류하였다. 각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²⁰⁾

16) 조선 창업의 주체들은 고려 왕조 붕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토지와 노비 관련 민사 소송의 만연과 그로 인한 미제 소송의 적체를 들었다. 임상혁, 위의 논문.

17) 김경숙, 『조선의 묘지소송』, 문학동네, 2012, 153쪽.

18) 심재우, 위의 책, 183쪽.

19) 야담집 색인 데이터베이스는 권기성·김동건에 의해 구축이 시도되었다. 권기성은 작품의 고유번호, 제명, 이본명, 제목, 출전, 관련 작품, 인물, 배경, 사건 등의 정보항을 구분하여 입력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기문총화』를 대상으로 그 초기 작업을 완료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송사, 판결을 소재로 하는 각화를 추출하였으며 각화에서 송사가 벌어지게 된 원인, 원고와 피고의 신분 및 성별, 판결의 정당성 여부 등을 통해 원고-피고-관장의 관계에 따라 송사담을 분류했다. 야담집 색인 데이터베이스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권기성·김동건, 『야담집 색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방안 모색-『기문총화(記聞叢話)』를 중심으로』, 『고전과 해석』 22, 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2017을 참고할 수 있다.

〈그림〉 야담집 색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송사담 추출 사례

ID	GOX	서	TITLE	NAME1	NAME2	NAME3	SEX	POI	PO	POSTIT	C_N1	C_NA	C_N2	C	C_POSI	C_P	C_N2	C_N3	C_N4	C2_1	C2_PO	C3_1	EVE	EVI	EVE							
1	靑邱野談	백	江江夜學批學刑法	NULL	이완	李完	남	양반	관장	형조판서 이송	李會	NULL	NULL	남	양반	장령	척	양씨	韓某	NULL	남	양인	NULL	살인	재물	송사	현명					
2	靑邱野談	백	法半官賃債通明府	NULL	중	남	천민	승려	상인	NULL	NULL	소장사	남	양인	NULL	척	홍양목	韓某	NULL	남	양반	관장	NULL	NULL	도적	재물	송사	현명				
3	靑邱野談	백	程凶傳眞賊伯部客	NULL	황인길	黃仁吉	NULL	남	양반	관장	평안감사	NULL	NULL	과부	여	양반	과부	원	NULL	NULL	중	남	천민	승려	척	NULL	살인	정철	반권	현명		
4	靑邱野談	백	涇州徐羅術精筭	NULL	이지광	李趾光	NULL	남	양반	관장	정주원	NULL	NULL	중	남	천민	승려	원	NULL	NULL	후회	남	NULL	NULL	척	NULL	도적	재물	송사	현명		
5	靑邱野談	백	新編路忠夜鳴冤	NULL	박씨	朴氏	NULL	여	양반	과부	원	김조술	金祖述	NULL	남	양반	NULL	척	NULL	NULL	관장	남	양인	NULL	NULL	만수	양물	노비	양물	현명		
6	靑邱野談	백	趙命李美談兩岸	NULL	NULL	NULL	과부	여	양반	과부	원	NULL	NULL	사복집	남	양인	NULL	척	NULL	NULL	관장	남	양인	관장	살인	정철	양물	양물	현명			
7	靑邱野談	백	雲梯英天山梯聖	NULL	NULL	NULL	아유가	재상	남	양반	관장	전랑감사	NULL	NULL	여	여	송인	이방의	말	원	NULL	NULL	계	여	송인	NULL	척	NULL	살인	정철	해원	현명
8	靑邱野談	백	靈龜冤天人羅米獄	NULL	NULL	NULL	말왕	남	양반	관장	말왕	원	NULL	NULL	여	여	양인	전랑원의	말	원	NULL	NULL	계	여	송인	NULL	척	NULL	살인	정철	해원	현명
9	靑邱野談	백	輪船冤亞細亞	NULL	김아무개	金아무개	NULL	남	양반	관장	형조상	NULL	NULL	여	여	양인	조랑의	말	원	NULL	NULL	남	남	양인	NULL	척	NULL	살인	정철	해원	현명	
10	靑邱野談	백	官官官官官官	NULL	NULL	수물	과부	여	양인	과부	원	요강	某	NULL	남	천민	NULL	척	NULL	NULL	관장	남	양인	관장	정물	관장	정물	관장	정물	관장	정물	관장
11	靑邱野談	백	官官官官官官	NULL	유아무개	柳아무개	NULL	남	양인	언의	형사원	NULL	NULL	양인	남	양인	상양	척	NULL	NULL	아무개	남	양인	상인	울	NULL	간통	살인	보은	관장	정물	관장
12	靑邱野談	백	官官官官官官	NULL	NULL	신씨	남	양인	관장	월남	NULL	NULL	양인	남	양인	아전	NULL	NULL	NULL	NULL	NULL	아무개	남	양인	좌수	NULL	도적	사기	재물	관장	정물	관장
13	漢西雜錄	성	中和縣有一殺獄	NULL	김가	金某	NULL	남	양인	NULL	NULL	NULL	NULL	남	양인	NULL	NULL	이태영	李泰永	NULL	남	양반	관장	평안감사	NULL	NULL	살인	자살	반권	현명	현명	현명
14	記閑雜錄	연	朴松堂英字子實	NULL	박영	朴英	NULL	남	양인	관장	김해부사	NULL	NULL	부인	여	양인	NULL	NULL	부인의	NULL	NULL	남	양인	NULL	NULL	NULL	살인	간통	검시	현명	현명	
15	東峰海錄	유	法官債通	NULL	조인명	趙仁命	NULL	남	양인	관장	경상감사	NULL	NULL	여	여	양인	NULL	원	NULL	NULL	여의	남	양인	NULL	척	NULL	살인	정철	재물	송사	양물	현명
16	羅記野談	유	針師	김각영	NULL	NULL	감	남	양인	승인	원칙	NULL	NULL	물	남	양인	승인	원칙	NULL	NULL	관장	남	양인	NULL	NULL	살인	사기	지해	송사	양물	현명	
17	羅記野談	유	冤	유영환	NULL	NULL	양장집	과두	여	양인	NULL	NULL	마순	남	NULL	고용살이	척	NULL	NULL	관장	남	양인	관장	NULL	정물	정물	송사	양물	현명	현명	현명	

〈표〉 야담집 소재 송사담

번호	제목	내용	분류	출전
1	中和縣有一殺獄	이태영이 평안도 감사로 있을 때 질부가 시숙을 찢러 죽인 사건 발생. 모두가 시숙이 질부를 겁탈하려다 살해당했다고 추정하였으나 두 사람의 말을 다 들어보아야 한다고 사건 무효.	남녀 겁탈	계서 잡록
2	朴松堂英字子實	박영이 김해부사로 있을 때 남편이 죽었다하여 통곡하는 여자가 있었음. 박영이 시체를 검시하여 배꼽 아래 대포창이를 찾아내고 여자가 정부와 함께 남편을 살해하였음을 밝힘.	부부 간통 살인	기문 총화
3	拯江屍李班受刑法	이완이 형조판서로 있을 때, 백성 엄씨와 장령 이증이 전담문서로 송사를 함. 이완이 엄씨가 옳다고 결송하였으나 엄씨가 나타나지 않음. 이증이 살해했다 여기서 형리에게 이증의 집을 엮담하게 함. 자복을 받아 이증을 죽임,	양반 상민 살인	청구 야담
4	治牛商賃僧逢明府	중이 2냥을 가지고 종이를 사러 장에 가다 20냥이 든 망대를 주움. 시장에서 주인을 찾아주었으나 주인이 오히려 중의 2냥을 탐내어 송사를 벌임. 관장 홍양목이 현명하게 판결하여 주인을 벌함.	상민 중 절도	청구 야담
5	捉凶僧箕城伯話舊	황인검이 젊어서 산사에서 공부할 때 한 중이 도음을 줌. 후에 경상 감사가 되어 다시 만난 중에게 출세를 약속하며 환속할 것을 청하나 중은 자신의 과거 살인을 고백함. 황인검이 고민 끝에 중을 형옥에 올려 처형함.	남녀 겁탈	청구 야담

20) 이하 표에서 정리한 송사담 각편은 한번 야담집에 수록된 이후 여러 차례 후대 야담집에 전제되기도 하였다. 여러 야담집에 중복 전제된 경우라도 편의상 본고에서 인용한 야담집의 명칭을 출전으로 기록하였다. 제목이 없는 각편의 경우, 작품의 시작 부분 7자를 임의로 제목으로 삼았다.

6	淸州倅權術捕盜	이지광이 청구 수령일 때 중이 종이를 잃어버렸다고 고함. 이지광은 장승을 구류하라는 억지를 부린 후 몰래 숨기고, 아전들에게 벌지 일숙을 내게 함. 그 속에서 중의 종이를 찾아주고 범인을 잡음.	상민 중 절도	청구 야담
7	訴輦路忠僕鳴冤	김조술이 과부 박씨를 혐모하여 사통했다는 소문 냄. 박씨가 관가에 송사했으나 들어주지 않자 칼로 목을 찢러 자결함. 시아버지 민씨가 다시 송사하나 역시 들어주지 않음. 시체를 매장하지 않았으나 썩지 않음. 종 만석이 서울에 올라가 격쟁하여 억울함을 풀게 됨.	남녀 정절 모해	청구 야담
8	訪名卜冤獄得伸	전주 과부가 목 베여 죽는 사건이 발생하고 이웃 사람이 범인으로 지목됨. 두 아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유운태라는 이름난 복사의 도움으로 과부를 혐모해온 괴역장을 진범으로 밝힘.	남녀 살인	청구 야담
9	雪神冤完山尹檢獄	전라감사가 여귀를 만남. 계모가 재산을 탐내 자신을 죽였음을 고함. 감사가 시체를 찾아 검시하고 계모를 처형함.	계모- 전실자식 살인	청구 야담
10	雪幽冤夫人識朱旌	밀양원이 거둬 죽음. 한 무변이 자원해 감. 그 부인이 도입날 밤에 무변을 대신해 앉았다가 여귀를 만남. 전 밀양원의 딸로, 고을 장교가 겁탈하려다 죽임. 원이 장교를 찾아내 처형함.	남녀 겁탈 살인	청구 야담
11	檢岩屍匹婦解冤	김상공이 여귀를 만남.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혹하여 자신을 음행이 있다는 핑계를 찢러 죽이고 시신 유기. 상공이 시체를 찾아 원한을 풀어줌.	부부 정절 모해 살인	청구 야담
12	吠官庭義狗報主	하동 지역에 수절과부를 이웃 모가비가 겁탈하려다 죽임. 키우던 개가 관문에 짖어 죽음을 알림. 이후 모가비의 집으로 가 그를 물어 범인임을 밝힘.	남녀 겁탈 살인	청구 야담
13	柒谷獄事	조현명이 경상감사로 있을 때 여귀를 만남. 판관 정언회를 칠곡으로 보내 7년 전 시체를 검시하게 함. 삼촌이 재산을 탐내 조카딸을 죽인 사건이었음.	가족 정절 모해 살인	동패 락승
14	匿屍身海倅償恩	유씨 성을 가진 사인이 젊을 때 상인의 부인과 간통. 상인이 이를 용서. 급제 후 해서고을 원님이 됨. 자신을 살려준 상인이 살육에 연루되자, 시신을 개의 사체와 바꿔치기 하여 상인을 방면해줌.	관-민 부정한 판결	청구 야담
15	善欺騙猾吏弄痴倅	아전이 원님 퇴임시 한몫 챙겨주려고 거짓 송사를 벌임. 죄수의 집에 함께 도둑으로 숨어든 후, 범인으로 잡힌 원님과 죄수의 늙은 아버지를 바꿔치기함. 다음날 죄수를 불러 아버지를 가두었다 하여 불효죄로 돈을 갈취함.	관-민 갈취	청구 야담
16	淸冤	서울의 한 과부를 머슴이 마음에 두고 형조에 사통했다고 송사함. 과부가 신체부위에 흉터가 있다고 하며 대질신문을 청	남녀 정절	잡기 고담

		함. 머슴에게 뇌물을 받은 자가 이를 전달하나, 과부에게는 흉터가 없었음.	모해	
17	發奸	공물대납권을 둘러싸고 갑, 을, 병 세 사람이 송사함. 이름 모를 선비가 피를 내 을의 억울함을 풀어줌.	민-민 사기	잡기 고담

송사의 내용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가장 빈번하게 출현하는 소재는 여성의 정절 모해 및 겁탈과 관련된 것이다. 신분의 우열을 이용해 양반이 상민에게 포학하거나, 상민이 중을 대상으로 절도를 저지른 사건도 있다. 앞서 살펴본 조선후기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경제 관련 범죄가 많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대상 야담집 중에는 매매문서 위조를 다루고 있는 한 편만이 확인된다. 드물지만 개인적 은혜를 갚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송사에 개입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괜한 송사를 일으키는 관원의 모습도 보인다.

이상에서 열거한 조선 후기 야담집의 송사담은 다음의 몇 가지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우선 송사담을 구성하는 인물로는 소송 당사자인 원고(元)-피고(隻) 두 사람과 이를 심리하는 관장이 반드시 포함된다. 그리고 이들 사이의 관계에 따라 이야기의 지향과 성격이 달라진다. 우선 원-척은 ⑤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우열의 관계에 놓여있다.

- ① 가족 관계(부부, 의모-의녀, 삼촌-조카, 시숙-질부)
- ② 남녀 관계
- ③ 양반-상민 관계(상민-중)
- ④ 관-민 관계
- ⑤ 민-민 관계

간통한 부인이 남편을 살해한 「朴松堂英字子實」과 공물대납인들 간의 분쟁을 그린 「發奸」을 제외하면 모두 사회적, 중법적 질서 내에서 원

이 척에 비해 낮은 위치를 점하고 있거나 여성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때 원과 척은 가변적 정의가 아니라 절대적 선악에 의해 선명하게 구분되는데, 이는 자연스럽게 원의 억울함을 가중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다만 ⑤는 여타 송사담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원과 척이 우열의 관계가 아니며 선악 또한 판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한편 양측에게 송사를 판결하는 관장은 원-척 모두의 우위에 자리하는데, 이때 관은 분쟁의 조정자이자 질서의 수호자이다. 원-척의 관계가 분쟁과 갈등의 양상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이들과 관의 관계는 세계 질서의 항구성 여부를 상징한다. 대부분의 송사담에서 관장은 선악을 공정하게 분별하여 원의 편을 든다. 그러나 「善欺騙猾吏弄痴倅」나 「匿屍身海倅償恩」과 같이 관이 척의 편에 서거나 혹은 그 자체로 척의 역할을 자임하며 원 위에 군림할 때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로 대변되는 세계 질서는 균열을 일으키고 마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위의 인물 관계는 다시 세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 ① 원<척<관 : 척이 원보다 사회적 지위 및 권력 관계에서 우위에 있으며, 관은 원과 척보다 우위에 있으며 공정한 판결을 내림
- ② 원<척=관 : 척이 원보다 사회적 지위 및 권력 관계에서 우위에 있으며, 관은 원과 척보다 우위에 있으면서 척의 편에 있음
- ③ 원=척≤관 : 원과 척은 사회적 지위 및 권력 관계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관은 이들보다 우위에 있으나 판결에 혼란을 보임

야담의 송사담은 ①유형이 가장 많으며, ②유형이 약간, ③유형은 드물게 나타난다. 그 이유와 의미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야담 향유층의 세계관과 취향, 개별 야담집 편찬자의 저술 동기나 목적, 현실사회와의 관련 등

에 대한 복합적인 고려가 필요할 터이다. 우선 여기서는 각 유형별로 원-척의 관계와 갈등의 내용, 재현의 방식, 서술자의 시각을 중심으로 송사담의 성격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해보기로 하겠다.

3. 1유형 - 원<척>관 : 세계 질서의 당위적 수호

이 유형에 속하는 송사담은 여성의 정절위협·정절모해·간통과 신분이 높은 자의 아랫사람에 대한 포학이 송사의 원인이 된다. 먼저 여성의 정절을 둘러싼 송사는 강상의 윤리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朴松堂英字子實』은 부인이 간부(姦夫)와 더불어 남편을 해치고 나아가 거짓 울음으로 관장을 속이려고 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그러나 부인의 속임수는 관장에 의해 들통 나고 마는데, 이는 역사적 인물 박영(朴莢, 1471~1540)의 현명함을 드러내는 동시에 강상의 질서가 유지됨을 보여준다.

한편 여성의 정절과 관련하여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은 정절위협 및 모해담이다. 이 중 이른 시기의 것으로 『동패략승』 『칠곡옥사』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조현명이 경상도 관찰사로 있을 때 대구도호부 중 5품 판관이 정언희에게 칠곡현으로 가 아전 배이발의 7년 전 죽은 딸의 시체를 검시하도록 한다. 죽었을 때 나이는 17세로 당시 옷차림과 머리장식까지 세세히 일러준다. 가서 묻은 곳을 파보니 옷도 상하지 않았고 얼굴빛도 그대로였다. 이에 아전 배이발의 동생 배지발을 심문하였다. 형의 재산을 상속받을 목적으로 그의 외동딸을 실행하였다고 모해하고 죽이자고 하였으나 형이 받아들이지 않자 남편래 죽이고 장례지냈던 것이다. 죽은 처녀귀신이 조현명의 꿈에 나타나 원한을 풀어달라고 했기에 이 사건이 드러날 수 있었다.

『칠곡옥사』는 『訴輦路忠僕鳴冤』, 『雪神冤完山尹檢獄』, 『雪幽冤夫人識朱旗』, 『檢岩屍匹婦解冤』, 『吠官庭義狗報主』 등 후대 야담집에 실린 정절모해담의 효시라 할 수 있다. 이들 이야기는 세부요소의 변개가 있으나, ‘정절모해 혹은 겁탈에의 위기-여성의 죽음-관장에 의한 해원(解冤)’이라는 동일한 구도를 지니고 있다. 여성은 가해자 남성에게 정절을 빼앗길 위기에 처하거나 정절을 잃었다는 오명을 얻게 되고, 그후 죽임을 당하거나 자결을 택한다. 그리고 때로는 귀신이 되어, 때로는 스스로 죽는 것으로 무고함을 밝히고자 한다. 여성의 억울함은 반드시 현철한 관장을 만남으로써 해원의 전기를 맞는 것으로 그려진다.²¹⁾

이러한 이야기에서 옥송이 일어나는 직접적인 이유는 여자의 죽음이지만, 기실 그 본질은 여성의 정절에 있다. 남성은 음욕 혹은 재산에 대한 욕심 때문에 여성을 모해하는데, 모해의 대상이 정절이라는 것은 문제가 된다. 사대부 여성에게 정절은 지켜야할 절대적 가치이며, 그렇기에 실제적으로 정절을 위협당하든, 단지 실행(失行)했다는 오명을 얻든 간에 여성은 죽음으로써 이에 저항한다. 이 지점에서 선악은 분명하게 구분된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절대적 가치를 수호하려는 존재는 절대선으로, 이를 훼손하려는 존재는 악으로 치부되는 것이다.

관장으로 대면되는 질서율에 의해 악은 징치되며 선은 오명을 벗고 승고한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 죽은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시신이 그대로 보존되었다거나, 미물인 개가 범인을 지목하였다는 등의 환상적 요소는 원고의 도덕성을 담보하고 관장의 공정한 판결을 돕는다. 이는 세계질서

21) 이런 종류의 이야기는 구비설화에도 다수 등장하는데, 구비설화에서 여성의 해원이 관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남성 가부장제와의 관련성 하에서 분석한 논의로는 조현설, 『원귀의 해원 형식과 구조의 안팎』,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3; 최기숙, 『처녀귀신: 조선시대 여인의 한과 복수』, 문학동네, 2010 등을 참조.

가 항구히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장치이다.

이와 비슷한 구도는 양반-상민, 혹은 상민-중의 송사에서도 확인된다. 신분적 우위에 있는 척이 원의 재물을 갈취하거나 포학을 부리고, 이것이 송사의 원인이 된다. 그 대표적 작품으로 『청구야담』의 『拯江屍李班受刑法』을 들 수 있다. 사헌부 정4품 관원인 장령 이증이 상민 엄씨의 전답을 갈취하려 하여 사송이 일어났고, 이는 관장의 현명한 판결에 의해 엄씨가 옳은 것으로 결송되었다. 그러나 엄씨가 실종되면서 사건은 옥송으로 넘어간다. 당시 이완이 형조에 있으면서 이증을 살인범으로 의심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증의 하인으로부터 엄씨를 죽여 한강에 버렸다는 자백을 얻어낸 다음 임금에게 공개적인 수사를 요청하기에 이른다.

“나라가 나라다울 수 있는 것은 형정과 기강에 있습니다. 지금 조정의 벼슬아치가 멋대로 송사를 했던 피고를 때려죽였습니다. 그런데도 단지 귀인이고 권세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을 바르게 하지 못한다면 나라가 어찌 망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건은 반드시 시체를 찾아야만 그 죄를 바르게 다스릴 수 있습니다. 신이 바야흐로 수색하여 시체를 찾는다면, 신은 반드시 이증을 쳐 죽이겠습니다.”²²⁾

나라가 나라다울 수 있으려면 질서가 바로서야 한다는 이완의 말은 절대적 질서율의 존재를 가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증을 쳐 죽이겠다”는 다짐으로 자신이 그 질서율을 지키고 수행할 존재임을 자임한다. 이는 한강 바닥을 긁어 시체를 찾아내고 이증을 형문하여 죽이는 것으로 결론난다. 관리가 되어 백성의 재물을 갈취하려 한 것도 모자라, 판결에 불복하

22) 버클리대본 『청구야담』 권6. “國之所以爲國者，刑政紀綱也。今者朝紳恣意搏殺訟隻，而只以貴勢之故，不得正法，則國安得不亡乎？此必得屍然後，可正其罪。臣方探之若得，則臣必手殺曾。”

고 그 백성을 살해하는 이증은 논란의 여지없이 악으로 묘사되고, 악을 장치하는 관장의 현명함을 강조하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이 역시 정절모해담과 동궤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유형의 송사담은 『대명률』 ‘위궤률(威逼律)’²³⁾에 판결의 근거를 두고 있다. 위궤률은 첫째, 호강들의 평민에 대한 위궤, 둘째, 남성의 여성에 대한 폭력을 처벌하려던 것이다. 이는 조선이 사족과 상민, 남성과 여성의 상하위계 및 성 역할의 차이에 기초한 사회질서의 수립을 도모하면서, 동시에 차별에 기초한 무단적 폭력은 용납하지 않기 위해 ‘억강부약(抑強扶弱)’의 시스템을 마련했음을 잘 보여준다.²⁴⁾ 관의 공명한 판결은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다.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선악이 명백하게 구별되고 관장이 선의 편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이러한 이야기는 송사라는 소재를 통해 중세적 질서를 옹호하거나 도덕률의 당위적 승리를 이끌어낸다. 서술자 또한 이야기의 결말부에 송사의 결과에 탄복하거나 전율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제시함으로써 이에 대해 긍정적인 시선을 보이고 있다. 또 송사담 중 가장 많은 각편이 이 유형에 속해있다는 것은 송사담을 향유하던 사람들의 기대와 취향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선이 승리하고 악이 패퇴하는 보편적이고 편안한 서사이며, 관장에 의해 구현되는 질서의 향존은 야담 향유층의 보수적 취향을 보여준다.

23) 『대명률』에 실린 ‘위궤치사’ 조항은 다음과 같다.

“어떤 일로 말미암아[因事] 사람을 궤박하여 죽게 한 자는 杖百이다. 만일 관리나 公使人이 공무가 아닌데 평민을 궤박하여 죽게 한 경우 죄가 동일하다. 아울러 埋葬銀 10량을 징수한다. 만일 친존장을 궤박하여 죽게 한 자는 絞刑에 처한다. 대공 이하는 형을 1등씩 감한다. 만일 강간하거나 도둑질을 하다가 사람을 궤박하여 죽게 한 자는 斬刑에 처한다.” 『대명률』 권19, 「형률」, ‘위궤인치사(威逼人致死)’.

24) 김호, 『조선후기 ‘위궤률’의 적용과 다산 정약용의 대민관』, 『역사와 현실』 87, 한국역사연구회, 2013.

4. 2유형 - 원<척=관 : 질서의 혼란과 균열

그런데 사실 무송을 이상으로 삼는 한, 송사의 발생은 그 자체로 이상적 질서의 균열을 의미한다. 앞서 살펴본 첫 번째 유형의 이야기는 설사 균열이 있더라도 관장으로 대변되는 질서의 수호자가 그것을 봉합하는 형국이라 하겠다. 그러나 만약 척의 성격이 모호하고 관장과 대립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면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匿屍身海倅償恩』과 『善欺騙猾吏弄痴倅』는 ‘척’과 ‘관’의 관계에 있어 또 다른 양상을 보여주는 작품들이다.

한 선비가 젊었을 때 상인의 부인과 간통하였다. 그러나 상인은 선비를 용서하고 아내의 죄 또한 현명하게 덮는다. 후에 관장이 된 선비는 살육에 연루된 상인과 재회하게 된다. 관장은 은혜를 갚고자 시신을 탈취하여 방죽에 유기하고, 그 대신 개의 사체를 가져다둔다. 시신이 사라져 검시를 할 수 없게 되자 송사가 성립하지 않아 상인은 무죄방면된다.

『匿屍身海倅償恩』은 두 개의 이야기가 결합된 형태로, 전체적으로는 보은담의 구조를 띠고 있다. 전반부는 선비가 상인의 아내와 간통하고 용서받기까지의 과정을, 후반부는 살육의 처결을 다룬다. 전반부에서 상인은 사려깊고 호쾌한 인물로 그려진다. 그는 자신에게 아내의 간통을 일러준 친구의 집으로 곧장 달려가는 대신, 먼저 자신의 집으로 가 아내의 부정을 다스리고 친구에게는 아무 일도 없었던 양 사건을 무마한다. 사통한 선비에게는 칼끝으로 술과 고기를 찍어 먹여주고, 깔끔하게 죄를 용서한다. 그런데 작품의 후반부에서 그는 갑자기 살인범이 되어 나타난다. 서술자는 그가 사람을 죽인 이유나 사건의 경과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데, 그 때문에 상인의 척으로서의 면모가 두드러지지 않게 되었다. 살인범이지만

그를 절대악으로 단정 지을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대신 서술자는 관장이 된 선비가 상인을 방면하기 위해 행하는 계책을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그것은 바로 시신 탈취였다.

관장이 원고에게 “네 아버지의 시체를 어디에 두고 죽은 개로 대신하느냐?”고 물으니, 원고가 두 눈이 휘둥그레지고 심신이 혼미하여 한 마디도 못하다가 한참 후에야 말을 하였다. “부친의 시신이 방 안에 있었으나 관가에서 검시하러 나오지 않은 까닭에 이불로 덮어 놓고는 옆에서 지키지 않고 외청에서 밤을 지냈습니다. 변괴가 이 지경에 이르니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관장이 “네가 필시 아버리를 다른 곳에 숨겨두고 죽었다고 무고하게 옥송을 일으켜, 네가 진 빛을 면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하고 엄히 신문하려 들자 그 사람이 울면서 “원통하옵니다.” 하고 소리쳤다.²⁵⁾

관장의 계책이 실행되면서 상인은 풀려난다. 그런데 관장이나 상인의 입장에서는 보은이라 하겠지만, 피살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몹시 억울한 일이다. 또 그 아들은 어떻겠는가? 아버지가 살해당한 것도 황망한 지경에 시신은 감쪽같이 사라져 제대로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게 되었다. 이 때 그 아들로 하여금 강상의 도리를 지키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무고죄를 덮어씌우는 것이 바로 관장이라는 점은 문제적이다. 관은 더 이상 절대적 질서의 구현자로서 기능하지 않는다.

『善欺騙猾吏弄痴倖』 또한 비슷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한 아전이 퇴임을 앞둔 관장의 가난을 염려하여 피를 내는데, 다름 아니라 부유한

25) 『청구야담』 권3. 推問元告曰: “汝父屍體藏於何處, 以死狗代置, 抑何故也?” 元告兩目瞠然, 心神迷亂, 不能出語, 良久供曰: “父屍的在室中, 以官家未檢之故, 只以被覆之, 而不爲傍守, 但於外廳經夜矣. 變怪至此, 不知其故矣.” 官答曰, “爾必隱匿爾父於他所, 稱以致死, 誣告成獄, 要免債徵也.” 欲加嚴訊, 其人叫呼稱屈.

좌수의 재물을 훔치기를 권유한다. 관장은 처음에는 화를 내지만 결국 아전의 말을 따른다. 그에 따라 관장은 도둑이 되어 좌수의 집에 들어가 가족 포대 안에 갇혔다가, 아전의 도움으로 좌수의 늙은 아버지를 대신 포대 안에 넣어두고 돌아온다.

“그대 집이 간밤에 도적을 잡았다하기에 범인을 잡아들이라 하였으니, 이제 마땅히 엄히 다스리리라.” 푸대를 끌러놓도록 하니 한 노인이 가족포대 속에서 하품을 하며 나오는 것이었다. 좌수가 보니 이는 곧 자신의 아버지라, 놀랍고 부끄러워 뜰에 내려가 엎드려 아뢰었다. “이는 곧 제 아버지입니다. 집 안사람들이 잘못 잡았으니 죄가 만번 죽을 만합니다.” 관장이 책상을 치며 크게 노하여 “내 일찍이 들으니 너의 불효가 온 동네에 자자하였다. 이제 무고히 강상을 범하니 용서치 못할 것이다.” 하고 하예를 호령해 좌수를 땅에 엎어놓고 20대를 때리니 살가죽이 문드러졌다.²⁶⁾

다음날 아침 좌수는 불효하다는 죄로 옥에 갇히고, 수천금을 내어 겨우 강상죄인이 되는 것을 면한다. 앞의 이야기가 관이 척의 편을 들어 원의 억울함을 가중시켰다면, 여기서는 관이 실질적으로 곧 척의 자리에 서 있는 셈이다.

조선시대 지방관은 소송의 일차 담당자로, 『경국대전』 『이전(吏典)』, ‘고과조(考課條)’에 수령이 지방을 통치함에 있어서 힘써야 할 일곱 가지 사항 중 하나가 바로 “소송을 간명하게 하는 것[詞訟簡]”이었다. 또 정약용은 『흠흠신서』 서문에서 목민관은 “선량한 사람은 그대로 살게 두고 죄

26) 『청구야담』 권6. “君家夜來捉賊云, 解來牢囚, 今當對嚴治.” 使做公門托來解出, 則一老漢自皮袋中, 欠伸而出. 座首見是其父, 驚惶慙懼, 下階伏罪. “此是民之老父, 而家人誤捉, 罪合萬死.” 知縣拍案大怒曰: “吾風聞爾之不孝著聞一縣, 今乃無故, 犯此綱常, 難可容恕.” 仍呼皂隸, 翻到在地, 猛打二十杖, 威捧皮綻血出.

를 지은 사람은 붙잡아 죽이니 이는 하늘이 가진 권한을 명확히 드러내 사용한 것”²⁷⁾이라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지방관은 곧 하늘의 대리자로 천리를 구현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그런데 이 유형의 송사담에서 관장은 자신의 책무를 저버리고, 이는 절대적 질서율의 존재에 회의를 품게 한다.

한편 두 작품 모두 도리어 ‘원’에게 죄를 덮어씌우는데, 그 죄가 불효의 강상죄라는 것도 중요하다. 첫 번째 유형의 송사담에서 강상죄가 절대적으로 치부되었던 것을 상기해보자. 관장이 범죄자의 편을 들거나 도둑질에 가담한 것도 문제적 사건이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억지로 꾸며낸 죄가 강상죄라는 것은 더욱 의미심장하다. 강상의 절대적 가치는 사라지고 개인의 부정한 이익 획득에 그것이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유형의 송사담은 원과 척의 선악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며, 척과 관의 관계가 뒤섞이면서 법적·도덕적으로 세계질서의 절대성에 균열이 가해지는 상황을 보여준다. 유가적 질서에 따라 정의가 실현되기보다는 돈의 문제나 개인적 의리가 판결에 있어 더욱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 유형의 이야기에서 척의 성격이 모호해지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절대선, 절대악으로 단일하게 치환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기원하는 것이기도 하다. 관계에 대한 이와 같은 인식은 마지막으로 살펴볼 유형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5. 3유형 - 원=척≤관 : 새로운 질서의 출현

이 유형에 해당하는 작품은 『잡기고담』의 『발간』이다. 그 내용을 간략

27) 정약용, 『흠흠신서』序. 안대회, 이현일 편역, 『한국산문선』 8, 민음사, 2017, 147쪽.

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집안의 재산을 다 털어먹은 갑이라는 사람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공물 대납권을 을에게 은 500냥에 팔면서 공물 대납권을 나누어 갖기로 했다. 5, 6년이 지나 갑이 나누어 대납하기로 한 공물을 약속대로 실어보내지 않는 일이 많았다. 을이 자신이 갑의 몫까지 모두 대납하고 갑과 나눈 대납권을 찾아오려고 했다. 갑이 걱정 끝에 병과 모의하여 공물 대납권을 주기로 하고 거짓으로 송사를 하게 했다. 마치 갑이 이미 10년 전에 대납권을 병에게 팔았고, 이후 을에게 이중으로 판매했으므로 병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내용이 었다. 갑과 병은 송사를 하기 전 미리 매매문서를 위조해 입안까지 받았으므로, 관가에서는 병에게 대납권을 주도록 판결했다. 을은 세 번 연이어 송사 했으나 송사 처결은 문건을 따르므로 계속해서 패소하였다. 관청 밖으로 쫓겨나 울고 있는 을에게 한 선비가 도움을 주었다. 병이 위조한 매매문서에 입안을 받은 날이 사실 나라의 제삿날이었다는 것이다. 제삿날에는 관청에서 일을 보지 않으므로, 그 문서가 위조인 것을 판명할 수 있게 되었다.

『잡기고담』의 편찬자 임매는 한성부 낭관으로 근무하면서 민간의 송사를 맡아 처리한 경험이 있다. 『발간』 또한 임매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으로, 송사의 판결은 문건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거나, 세 번까지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는 등의 당시 송정 풍경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앞서 살핀 송사담과 달리 경제범죄를 핵심으로 다루고 있다. 이는 상업경제도시로 변모해가면서 재화뿐만 아니라 서비스와 각종 권리도 상품으로 거래되었던 18세기 서울의 경제적 상황을 바탕으로 한다.²⁸⁾ 17세기 대동법이 시행되면서 국가는 필요한 물자를 공인에게서 조달받았는데, 이 공인의 권리인 공물대납권의 매매와 위조 사건을 기

28) 한국고문서학회, 위의 책, 117~119쪽.

록하고 있는 것이다.²⁹⁾

주지하듯이 17세기 후반부터 전국에 확대 시행된 대동법은 현물납에 따른 민역(民役)의 부담을 대폭 완화시켜주었다.³⁰⁾ 이에 따라 공물 납품의 권리를 가진 시장 상인인 공인(貢人)계층이 성장했는데, 바로 이들 공인권(貢人權) 소유자에게 세를 주고 역할을 대행한 사람을 분주인(分主人)이라 일컫는다. 그런데 공인들은 여러 분주인들에게 이중으로 그 권리를 매매하며 부정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많았다.³¹⁾ 『발간』은 그 사례를 이야기로 꾸민 것이다.

『발간』의 원-척 관계는 일견 선-악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다. 공물을 나누어 대납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나아가 문서를 위조해 을의 이익을 빼앗으려고 한 갑은 악이고, 돈을 주고 산 대납권을 억울하게 빼앗길 위기에 처한 을은 선이다. 그런데 을을 과연 절대선의 위치에 놓을 수 있을 것인가는 좀더 따져보아야할 문제다.

대납은 근본적으로 농사를 지어 물화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 하나로 사람들을 중간에서 착취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실제로 조선 후기 공인들이 소상품 생산자에 대한 수탈을 기반으로 부를 축적해간 사례들이 다수 확인되며,³²⁾ 갑과 을은 모두 그 구조에 편승해서 쉼을 추구하는 존재라 할 수 있다. 물론 이 이야기 속에서 그러한 정황까지 드러나는 것

29) 『일성록』과 『심리록』의 기록에 한정했을 때 한성부의 경제범죄 중 가장 많은 것이 바로 문서 위조였다는 점에서, 『발간』은 당대 경제범죄의 핵심을 다룬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심재우, 위의 책, 183쪽; 일성록 유승희, 『민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학사, 2014, 127쪽.

30) 최주희, 『조선 후기 부세수취 관행과 "중간비용"; 대동법 시행 이후 중간비용의 처리양상과 과외별역의 문제』, 『대동문화연구』 92,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5, 123쪽.

31) 한효정, 『조선 후기 분주인(分主人)의 존재양태와 활동양상 연구 - 공인문기(貢人文記)를 중심으로』, 『고문서연구』 51, 한국고문서학회, 2017.

32) 분주인에 관한 연구는 김동철, 『조선 후기 공인 연구』, 한국연구원, 1993.

은 아니며 을의 도덕성을 확인할 방법은 없다. 다만 앞서 살펴본 첫 번째 유형의 송사담에서처럼 강상의 윤리나 억강부약의 원칙을 절대적 가치로 인식하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이를 기술하는 서술자의 시선 또한 다분히 비판적이다.

송사를 하는 자들은 대개 영리하고 약삭빠른 자들로서 그른 것도 옳은 것으로 둔갑을 시킬 만큼 말재간이 여간 아니었다. 양쪽을 맞대면시켜 무릎맞춤을 할 적이면 말이 거침없이 번드레할 뿐만 아니라 조리가 분명하였다. 그들이 제출한 문건을 보아도 증거가 명백하여 흠잡을 데가 없고, 그 기색을 보아도 눈을 부릅뜨고 팔소매를 걷어붙이며 고래고래 소리를 치는 것이 마치 진짜로 지극히 원통한 사정을 품고 풀지 못하는 것 같아 끝내 누가 옳고 그른지 알 수가 없다.³³⁾

임매는 이야기의 끝에 위와 같은 평을 붙인다. 원과 척 둘 중 하나를 긍정할 수도 없으며, 그것을 선악으로 명백히 판가름할 수 있는 관장도 없다. 이제 원-척-관의 관계 속에서 절대적 질서는 사라졌으며 각자가 자신의 입장에서 스스로를 변호할 뿐이다. 두 번째 유형의 송사담이 절대적 질서의 균열을 표상했다면, 『발간』은 절대적 질서가 부재하는 시대를 그리고 있는 것이다. 대신 당위적 질서의 자리를 차지한 것은 계약에 의한 신(信)이다. 관장의 현철함이 아니라 계약과 그 증거인 문건이 판결의 유일한 근거가 되며, 그것의 옳고 그름은 판단하기 어렵게 되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을에게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일깨워준 것은 관장이 아닌 한 선비였다. 선비의 한 마디 말 덕분에 갑이 병과 짜고 사기행각

33) 임매, 『잡기고담』, 『발간』. “訟者大抵傑黠奸刁, 言足以飾非者也. 每兩造對辯之際, 言辭瀾翻, 悉中條理. 閱其文案, 則左契詞澄, 俱有依據. 察其氣色, 則又皆曠目攘臂, 疾聲大呼, 實若有抱至冤而莫白者, 竟不知誰爲曲直.”

을 꾸뻤다는 것이 밝혀지며, 이때 선비의 기지(奇智)는 그의 초라한 행색과 대비되면서 마치 이인(異人)과 같은 면모를 보인다. 그러나 선비 역시 을에게 50냥이라는 현물 대가를 요구한다. 억강부약의 원칙이나 천리의 실천을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는 인물의 등장을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발간』에는 당연히 지켜져야 한다고 믿어져왔던 강상의 질서가 아니라 문서로 작성한 계약을 ‘신(信)’으로 받아들이는 새로운 질서율이 그려져 있는 것이다.

6. 결론을 대신하여

: 송사담의 성격 변화를 통해본 사회 변화의 징후

앞서 살펴본 세 유형의 송사담에서 역사적 변모의 흐름을 도출하기는 어렵다. 다만 18~19세기라는 시기에 강상의 죄인에서 경제사범까지 다양한 현실의 부면을 담아낸 송사담이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상업경제사회를 기반으로 한 『발간』과 같은 송사담이 세계상의 변화를 담아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세계상의 변화는 그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과 개인,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조선이 통치 이념으로 삼았던 예치의 기획에 따르면, 천자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自天子以至於庶人] 모든 사람은 자신의 도덕성을 밝히고[明明德] 타인을 일깨워[新民] 정의로운 사회[至善]에 도달해야 했다. 모든 사람은 도덕적 본성을 지니고 있으며 유교적 계몽정치의 과제는 天理에 의해 모든 인간에게 평등하게 부여된 도덕적 잠재력을 현실화하는 것이다.³⁴⁾ 그러면 사회는 예에 의해 다스려

지기 마련이다.

사실 송사담은 그러한 예치 작동의 예외적 순간들을 포착한 것이다. 소송의 상대자(척)은 절대적으로 간주된다. 송사는 원과 척이 진실을 두고 벌이는 다툼이지만, 주체의 입장에서 이는 자신의 선을 유지하기 위한 투쟁이자 노력인 셈이다. 이때 주체는 악을 행하지 않기 위해 수기(修己)와 수양(修養)을 게을리 하지 않았지만 악인에 의해 일시적으로 곤경에 빠지게 된다. 이때 강상의 질서를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올바르게 행동하면 천리에 의해 반드시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러한 송사담의 결말은 악의 징치와 신원(伸冤)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상업경제사회로의 변화는 주체에게 있어 다른 방식의 태도를 요구한다. 절대적이고 항구한 질서인 천리(天理)를 구현하기 위한 수양 외에도 신속성, 논리성, 교활함을 기반으로 한 상대와의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대상은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 선악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었으며, 달리 말해 선악은 상대와의 관계성 속에서 존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시기의 송사담은 선악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양상을 보이며, 원고와 피고는 관계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옳은지를 항변하게 된다. 그 결과 역시 신원이라기보다는 각자의 주장에 의한 다툼과 승리일 뿐, 판결이 이루어진 후에도 절대적으로 선한 존재는 발견되지 않는다. 앞서 사기를 치는 사람이나 당하는 사람이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되지 않는 『발간』을 통해 이를 확인한 바 있다.

결국 송사담의 변화는 공동체 보편의 도덕률이나 주체의 도덕에의 의지, 수양이 아니라 관계의 상대성에 주목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곧 세계질서가 하늘이 부여한 절대적 질서 대신 구성원들 간의 협의와 계

34) 박영도, 「유교적 공공성의 문법과 그 민주주의적 함의」, 『동방학지』 164, 연세대 국학연구원, 68쪽.

악에 의한 가변적 질서로 옮겨가는 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

물론 그러한 변화가 일거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며, 야담의 송사담이 이를 전면적으로 드러내고 있지도 않다.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야담은 여전히 강상의 절대적 질서가 지켜지는 세상을 그려낸다. 이는 선이 승리하고 악이 패퇴하는 보편적이고 편안한 서사이며, 야담 향유층의 보수적 취향을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야담이 새로운 시대의 질서 또한 동시에 담아내고 있음 또한 분명한 사실이며, 송사담을 통해 변화의 일단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참고문헌

1. 자료

정사룡, 『湖陰雜稿』

임매, 『雜記古談』

이희평, 『溪西雜錄』

노명흠, 『東稗洛誦』

정약용, 『欽欽新書』

『紀文叢話』

『靑邱野談』

2. 단행본 및 논문

권기성·김동진, 「야담집 색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방안 모색-『기문총화(記聞叢話)』를 중심으로」, 『고전과 해석』 22, 고전문학한문학회연구학회, 2017, 93~126쪽.

김경숙, 『조선의 묘지소송』, 문학동네, 2012, 1~153쪽.

김동철, 『조선후기 공인 연구』, 한국연구원, 1993, 1~258쪽.

김명화, 「조선시대 수령의 소송지침서 『사송유취』의 편찬과 활용」, 『서지학연구』 66, 서지학회, 2016, 333~366쪽.

김준형, 「야담에 나타난 윤리의 위반과 법, 그 문화사적 의미」, 『돈암어문학』 27, 돈암어문학회, 2014, 37~66쪽.

김 호, 「조선후기 ‘위궽률(威逼律)’의 적용과 다산 정약용의 대민관(對民觀)」, 『역사와 현실』 87, 한국역사연구회, 2013, 541~575쪽.

박소현, 「법률 속의 이야기, 이야기 속의 법률」, 『대동문화연구』 77,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413~450쪽.

박영도, 「유교적 공공성의 문법과 그 민주주의적 함의」, 『동방학지』 164, 연세대 국학연구원, 2013, 65~83쪽.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편역, 『완역이옥전집』 2, 소명출판, 2001, 1~366쪽.

심재우, 『조선후기 국가권력과 범죄 통제』, 태학사, 2009, 1~346쪽.

유승희, 『민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학사, 2014, 1~285쪽.

이현홍, 「문헌소재 송사설화의 유형과 의미」, 『배달말』 14, 배달말학회, 1989, 337

~369쪽.

- 임상혁, 『조선 전기 민사소송과 소송이론의 전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0, 1~228쪽.
- 전경목, 『조선후기에 서당 학동들이 읽은 탄원서』, 『고문서연구』 48, 한국고문서학회, 2016, 257~286쪽.
- 전경목, 『서당 학동이 읽은 필사본 ‘용례집’의 내용과 특징』, 『한국고전연구』 34, 한국고전연구학회, 2016, 279~326쪽.
- 조 광, 『18세기 전후 서울의 범죄상』, 『조선 후기 사회의 이해』, 경인문화사, 2010, 143~168쪽.
- 조지만, 『조선시대의 형사법-대명률과 국전』, 경인문화사, 2007, 1~414쪽.
- 조윤선, 『조선 후기 소송 연구』, 국학자료원, 2002, 1~343쪽.
- 조현설, 『원귀의 해원 형식과 구조의 안팎』,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3, 65~96쪽.
- 최기숙, 『치녀귀신: 조선시대 여인의 한과 복수』, 문학동네, 2010, 1~176쪽.
- 최주희, 『조선후기 부세수취 관행과 "중간비용": 대동법 시행 이후 중간비용의 처리양상과 과외별역의 문제』, 『대동문화연구』 92,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5, 95~128쪽.
- 한국고문서학회, 『조선의 일상, 법정에 서다』, 역사비평사, 2013, 1~358쪽.
- 한효정, 『조선후기 분주인(分主人)의 존재양태와 활동양상 연구 - 공인문기(貢人文記)를 중심으로』, 『고문서연구』 51, 한국고문서학회, 2017, 169~190쪽.

ABSTRACT

Three types of lawsuit story
in late Joseon period yadam and its meaning

Lee, Seung-eun

This study aims to classify the lawsuit story of late Joseon period by three types according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ople participating in the lawsuit, and to explore the social changes reflected in the story and the values that yadam oriented.

In order for the accusation to be established, it is essential that the plaintiff, the defendant, and the judge make a ruling. The first type of lawsuit story is clearly distinguished between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according to the standard of good and evil. It has a structure in which the problem of the real world is solved by the profitable order represented by the judge, and the law of the world is permanently preserved in the story. The second type is the case that the judge is on the side of the defendant, or make plaintiff resentful under false accusation. In this type, judgments is influenced by realistic situations, such as money or personal acquaintances, rather than by profitable order, and it reflects the anomy of the world. The third type of the story emphasizes the problem of contract and trust in relation. There's no absolute and normative valu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plaintiff and defendant is difficult to distinguish by the standard of good and evil.

The cause of the lawsuit in late Joseon dynasty is gradually diversified away from the problem of the moral principles to economic crime, and the story also reflects the change of reality. However, there are still frequent recordings of the first type of lawsuit story in yadam, which gives us a glimpse of the idea that yadam readers imagine.

Key Words yadam, database, lawsuit, accusation, lawltionship, late Joseon period

논문투고일 : 2018.04.15

심사완료일 : 2018.05.09

게재확정일 : 2018.05.15